

##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 회 의 명 : 제37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 회의일시 : 2016. 6. 30.(목) 09:35

□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 참석위원 : 최성준 위 원 장  
김재홍 부위원장  
김석진 상임위원  
이기주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 (5인)

□ 불참위원 : 없 음

---

## 제37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 09시 35분 개회 】

### 1. 성원보고

- 최성준 위원장
  - 이소라 의안·정책관리팀장, 성원 보고해 주십시오.
- 이소라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 2. 국민의례

- 이소라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 3. 개회선언

- 최성준 위원장
  - 2016년도 제37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4. 지난 회의록 확인

- 최성준 위원장
  - 지난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은 속기록 작성 및 위원님 확인이 끝난 후에 다음 회의에서 접수하겠습니다.

#### 4-1. 서면회의 결과 확인

○ 최성준 위원장

- 그리고 6월 28일에 있었던 제36차 서면회의 결과, 제의된 <보고안건> 2건이 원안대로 접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회의록에 이의가 없으시면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최성준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2건, <보고안건> 1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6. 의결사항**

**가. 2015년도 방송평가 기본계획에 관한 건 (2016-37-137)**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가> ‘2015년도 방송평가 기본계획에 관한 건’에 대하여 신종철 편성평가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신종철 편성평가정책과장

- 우선 방송기반국장이 중국과의 외부 회의로 제가 대신 보고드림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2015년도 방송평가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입니다. 의결주문 및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으로는 2015년도 「방송평가 기본계획」을 <붙임>과 같이 심의·의결하기 위한 것이고, 제안이유로는 방송법 제17조에 따른 재허가(재승인) 대상 방송사업자에 대한 2015년도 방송평가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평가대상입니다. 평가대상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대상사업자는 재허가·재승인 대상인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보도·종합편성·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자입니다. 2015년도 평가대상 사업자로는 총 153개 사업자이며, 특이사항으로는 2015년도 평가에는 데이터홈쇼핑 사업자 2개가 포함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평가기준입니다. 평가영역으로는 방송법 제31조제1항 및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내용·편성·운영 영역으로 나누어 종합 평가하는 것입니다. 세부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평가배점으로는 지상파 900점, 종편PP 700점, SO·위성 550점 등입니다. 다음 평가절차입니다. 평가절차는 평가지원단 심사, 방송평가위원회 심의, 방송통신위원회 의결을 거

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평가 결과의 활용입니다. 방송평가 결과는 방송법 제17조제3항제1호에 따라 재허가·재승인 심사 시 일정비율 반영되며, 결과는 방송사업자와 국민들의 접근 용이성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배너를 활용하여 평가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추진 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붙임>도 생략하겠습니다. 보고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방송평가는 기존의 방송평가규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 신종철 편성평가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번에 방송평가규칙을 개정했는데 그것은 2016년도 방송분부터 적용이 되는 것이고, 2015년도 방송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방송평가규칙에 의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고, 따라서 「방송평가 기본계획」이 종전 것과 내용상에 있어서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까?

○ 신종철 편성평가정책과장

-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평가배점을 보면 지상파 900점, SO와 위성은 550점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평가대상들이 세부평가항목은 다 같은 것이지요?

○ 신종철 편성평가정책과장

- 예.

○ 김석진 상임위원

- 다만, 배점이 다르다는 것이지요?

○ 신종철 편성평가정책과장

- 예.

○ 김석진 상임위원

- 배점에 차등을 둔 이유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 좌미애 편성평가정책과 서기관

-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면 배점에 차이가 있는 것은 항목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항목도 있고

지상파와 플랫폼사업자인 SO와 위성방송사업자, 중편PP와 홈쇼핑PP, 보도PP에 대해서 적용 항목이 약간 다른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플랫폼사업자들의 경우에는 이용자와의 계약 관계들도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떤 항목은 적용하는 것이 있고 적용하지 않는 것이 있다 보니까 배점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예를 들어서 지상파의 총점과 SO나 홈쇼핑이 만점도 다릅니까?

○ 좌미애 편성평가정책과 서기관

- 기준점수가 만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지상파는 900점이 만점이다, 그런 의미라는 것이지요?

○ 좌미애 편성평가정책과 사무관

- 예.

○ 김석진 상임위원

- 편성영역의 평가배점을 보면 사회기여 프로그램 편성 항목이 있습니다. 어린이프로그램 편성평가는 당연히 홈쇼핑 같은 데는 이런 세부항목이 적용 안 되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장애인 시청지원 프로그램 편성평가, 또 재난방송 편성평가에 각각 홈쇼핑 같은 경우가 10점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홈쇼핑 방송에서 장애인방송, 재난방송을 편성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그런 예가 있었습니까?

○ 좌미애 편성평가정책과 서기관

- 재난방송을 편성한다기보다는 그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홈쇼핑도 상품판매만 24시간 하는 것이 아니고 공익광고나 공익판매 형식으로 하는 시간이 중간중간에 있습니다. 우리가 못 봐서 그렇지, 새벽시간대에 방송하는 것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맞는가 모르겠는데 일반PP도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재난방송을 별도로 할 수 없지만 밑에 자막으로 재난상황을 내보내도록 지난번에 규정을 만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런 것이 반영이 되어 있군요?

○ 좌미애 편성평가정책과 서기관

- 예.

○ 김석진 상임위원

- 예를 들어 장애인·재난방송이 유명무실하다면 다른 데로 배점을 더 돌려서 홈쇼핑 같은 경우는 어린이방송은 아예 안 들어가 있지만 장애인방송을 하는 경우가 잘 없으리라고 생각된다면 현실적으로 다른 데에 배점을 더 반영하는 것도 방법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얼핏 들어서 제가 여쭙 본 것입니다. 방송평가 결과는 재허가·재승인 심사 시 일정 비율이 반영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체 총 배점 중에 평가받은 배점이 재허가·재승인 받을 때 실제로 영향을 크게 미친다고 보는 것입니까? 실제로는 어느 정도 비율로 반영이 됩니까?

○ 좌미애 편성평가정책과 서기관

- 재허가·재승인할 때는 법적으로 적용비율을 규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방통위와 미래부 같이 인허가를 담당하는 부처에서 지상파나 사업자들 재허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평가점수를 몇 퍼센트 반영한다는 것을 의결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지상파 같은 경우 지상파 재허가 전체 점수 중에 40% 배점하였고, 그리고 기존 홈쇼핑 같은 경우도 35% 정도는 반영하였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지금까지 평가해서 방송평가 결과로 재승인이나 재허가를 못 받은 경우는 아직 없었지요?

○ 좌미애 편성평가정책과 사무관

- 예,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부위원장

- 참고로 지난주 방송평가위원회 회의가 열렸고 거기에서 이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해서 전체 회의에 상정시킨 것입니다. 평가절차를 보면 방송평가지원단에서 실무작업을 하고 방송평가위원회가 심의해서 또 우리 전체회의에 상정하게 됩니다. 일을 해 보니까 방송평가 위원들이 하는 일은 기본계획을 정하고 배점을 포함한 시행세칙을 결정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정해 놓으면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세칙과 배점을 거의 기계적으로 정량적으로 적용하는 일을 방송평가지원단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심의자료가 되는 초안을 만드는 실무작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무처와 또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방송평가지원단이 심의자료를 잘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방송평가위원회 심의에서 큰 골격을 바꾸거나 중요한 사항을 바꾸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워낙 일이 많고 평가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방송평가지원단의 작업을 믿고 심의과정에서 대체로 큰 문제가 없으면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작업을 잘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도 그렇고 시행세칙도 그렇고, 방송평가위원회와 이 전체회의에서 의결해 놓으면 고지해서 최소한 1년 지난 뒤에 적용을 하기 때문

에 이번에 방송평가위원들이 다 바뀌었습니다만 전임 평가위원들이 결정, 또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기본계획과 시행세칙을 이번에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송평가지원단의 실무작업을 잘하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되었습니다.

**나. 2016년 제2차 위치정보사업자 신규 허가에 관한 건 (2016-37-138)**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나> ‘2016년 제2차 위치정보사업자 신규 허가에 관한 건’에 대하여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의결주문입니다. ‘부산은행, 애드믹스엠홀딩스, 에이티엔, 인텔리안시스템즈,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조이코퍼레이션 6개 법인에 대해 아래 사항을 허가조건으로 부과하여 위치정보사업자를 허가한다’입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위치정보법」 제5조에 따라 금년도 제2차 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법인에 대한 심사 결과를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추진경과로 금년 5월 10일부터 5월 20일까지 허가 신청 공고를 하였고, 이 공고에 따라 아래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 11개 법인이 허가 신청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고, 심사 결과는 이에 따라 6개 법인에 대해서는 적격으로 판단하였으나 넥스트페이지, 리림, 야놀자, 앤씨이앤, 하나씨티피 5개 법인에 대해서는 5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은 이유로 총점 미달이 되어서 부적격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허가조건은 위치정보 보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의결주문과 같이 허가조건을 부과하고자 하며, 오늘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 주시면 심사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 12월에도 부산은행이 신청을 했지요?

○ **황지은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사무관**

- 예,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때는 탈락했지 않습니까?
- 황지은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사무관
  - 예, 탈락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때 탈락하게 된 주된 이유가 아마 위치정보 보호조치의 적정성 점수가 낮아서 탈락했을 것입니다.
- 황지은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사무관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물론 많이 보완했겠지만 그때와 지금 달라진 것, 혹시 설명이 가능합니까?
- 황지은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사무관
  - 부산은행은 기본적으로 은행이기 때문에 금융 쪽 보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작년 12월 떨어진 이유는 위치정보법에 규정되어 있는 정보발송 계획이라든지,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 제공 계획이라든지 위치정보보호법에 맞는 조치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탈락요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위치정보보호법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법에 맞는 여러 가지 보호조치들을 완비하였기 때문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저희가 위치정보를 활용한 사업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두 달마다 위치정보사업자 신규허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계속 이 안전이 올라올 것 같은데 지금 잠깐 언급이 되었던 것처럼 위치정보를 활용해서 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위치정보 보호가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대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도 꼼꼼하게 잘 심사가 이루어졌지만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더 중점을 두어서 안전한 위치정보 이용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동안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위치정보산업 실태조사, 이런 것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 황지은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사무관

- 예, 매년마다 위치정보산업 실태조사를 용역기관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사업주들에 대한 설문방식으로 하고 있고, 올해부터는 따로 예산을 배정해서 전문기관에서 연구과제로 해외기술 동향이라든지 아니면 해외 서비스 기술동향 등을 포함해서 좀 더 전문적인 자료를 만들려고 합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전문기관은 어디이고, 금년에 반영된 예산은 얼마입니까?

○ 황지은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사무관

-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전체적인 예산이 내려갔고, 그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좀 더 전문적인 연구기관을 선정해서 용역을 줄 예정입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실태조사를 전에도 했습니까?

○ 황지은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사무관

- 예, 사업주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한 실태조사는 몇 년간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런데 우리가 방송이다, 통신시장이다, 이래서 일반적인 산업 전반에 걸친 실태, 현황조사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경쟁상황평가도 하고 다각적으로 하는데, 저는 이 위치정보 산업에 대한 실태조사가 위치정보사업자가 적은 규모일 때 개별사업자에게 서베이 형태로 하던 차원을 떠나서 아주 다차원적으로 분석적인 그런 위치정보산업 현황, 실태에 관한 에뉴얼리포트(Annual Report) 형태가 앞으로는 나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궁금해서 묻고 싶은 것도 전체 신청법인 중에 이번에는 부적격사업자가 5개나 되는데, 그러면 오랫동안 아주 많은 신청법인이 계속 있어 왔는데 얼핏 보니까, 이번에 부적격 비율이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위치정보사업자들이 많이 시장에 진출을 했는데 왜 이렇게 부적격 상태로 들어오는 신청법인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적격 판정을 받은 법인 같은 경우에는 위치정보사업의 기술방식은 뭐고, 여기 보니까 외국계 자동차회사도 있고 은행도 있는데 어떤 분야에서 어떤 기술 방식을 가지고 어떤 솔루션으로 위치정보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것인지 궁금한 것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것은 위치정보사업에 대한 허가 개념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활성화 계획도 만들고, 지금 다각적으로 사업자 자율협회도 만들도록 저희가 지원하려고 하고 많은 활동들을 하는데 그중에서 가장 기본이 현재 위치정보산업의 스테이터스(status)를 잘 분석해서 제공하면 여러 가지 의미에서 유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인터넷진흥원이 위치정보사업 내지는 산업에 대한 전문기관일까? 다른데 딱히 할 데가 없어서 거기에서 초기 단계부터 해 왔지만 그런 것도 생각해 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또 해외에서의 위치정보산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IoT라고도 볼 수도 있고 빅데이터라고도 볼 수 있고, 개념적으로 다르다고 이야기하지만 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명확히 구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중복되는 서비스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누차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립니다만, 대한민국에 있어서 위치정보사업은 특별법을 가지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잘 발전시켜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렸지만 1차적으로는 지금 정확히 모르겠지만 수백 개 이미 허가받은 사업자들이 있는데 그 실태를 잘 분석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 더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 7. 보고사항

###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관한 사항

○ 최성준 위원장

- <보고사항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먼저 보고사유입니다. 지난 3월에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이 금년 9월 23일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개정내용입니다. 첫 번째, 용어의 변경사항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상에서 ‘취급’을 ‘처리’로, ‘누출’을 ‘유출’로,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변경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동법 시행령에도 반영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개인정보의 분리보관에 관련된 규정 정비가 되겠습니다. 3쪽에 보시면 ‘1년’ 또는 ‘이용자가 요청한 기간’은 경과하였으나 타 법령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하지 않아 개인정보를 보관해야 하는 경우,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보관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는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시 이전되는 항목과 국가 등을 이용자에게 통지한 경우 처리위탁에 따른 통지방법을 “전자우편·서면·모사전송·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로는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과 관련해서 정보통신망법 제76조의 개정에 따라 ‘동의없는 개인정보 처리 재위탁’, ‘통지 또는 동의 없는 국외 처리위탁’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4쪽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한편 ‘일부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시정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규정이 ‘모든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불이행 시’로 확대됨에 따라, 5쪽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정보통신망법 제76조제3항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불이행의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그 이외 시정명령 불이행의 경우에는 300만원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지금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 관련된 규정, 제도가 계속 개선, 보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 이기주 상임위원

- 한쪽에서는 법률이 개정되고, 그다음에 후속으로 지금처럼 하위 법령인 시행령이 개정되고, 또 한편에서는 또 다른 법률이 개정됩니다. 또 해설서가 나오고, 가이드라인이 나오는데 어느 특정 시점에서 가장 업데이트된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보호 제도 현황을 알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런 자료를 만드는 것을 게을리 해서라기보다는, 지금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개선, 보완하다 보니까 이쪽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어느 것이 개정안이고, 어느 것이 개정된 내용이고, 어느 것이 시행되고 있는지 알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이용자정책국에서 한 번 연구해 보십시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 분야에 종사하는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들조차도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앞으로 시행될 것으로 미리 준비해야 할 사항이 무엇이고, 법률이나 법령 내용은 아니지만 가이드라인이나 해설서나 이런 내용은 무엇인지 알기 어려운데, 정말 대한민국에서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하는, 이 분야에 종사하는, 정부에 있는 공무원이든 업체나 이런 기관에 있는 분들이든 일반 국민들이든 누가 보아도 그 내용을 잘 알 수 있게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을 담당하는 행자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등까지 따지면 내용도 크고 조금씩 다른 경우도 있어서 까다로운데 그것을 한 번 차제에 연구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아마도 사업자들도 개인정보 관련된 제도가 계속 변경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기주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자료를 만들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주기적으로 이 개인정보 관련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꼭 오프라인이 아니라도 온라인상으로라도 정보를 제공해 주는 루트를 만들어서 그쪽분야에서 관련 제도가 변경됐는지 잘 몰라서 조치를 못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부위원장

- 3페이지를 보면 개인정보를 국외 이전할 때 처리위탁에 따른 동의절차를 생략하고 통지의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그리고 통지방법을 개인정보취급위탁 통지 규정 등과 동일하게 한다는 것이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국외이전하고 국내에서 제3자에게 이전, 위탁하는 것과 똑같이 하는 것입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취급 위탁, 통지방법에 있어서 국내에서의 취급위탁과 국외이전 시 처리위탁 할 때 결국은 통지를 해야 하는데 그 방법을 동일하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본인들이 직접 할 때는 인터넷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본인들이 직접 국내 어떤 서버가 의심이 가고 불신을 받으면 국외에 있는 서버로 직접 다 피난 가는 현상이 있는데 요컨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처리위탁하는 것은 빅데이터 산업의 진흥 활성화를 위해서 국내 산업 경제상 필요할지 모르겠는데 국외로 이전할 때 똑같이 할 필요가 있는가, 그렇게 해도 괜찮은지 문제를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를 들어서 기술적·관리적인 조치라든가 유출 시 책임, 제재의 문제라든가는 엄격하게 동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단지 통지의 방법, 결국 개인정보 주체자에게 국외이전을 해서 처리를 위탁한다는 통지의 방법만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통지방법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국내외를 동일하게 해 놓았는데 그것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어서, 예를 들면 유럽에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제된 것이 재판도 걸고 한 것이 구글이나 페이스북에서 동의받지 않고 자기들이 이전받은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처리 가공해서 썼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본인들이 직접 거기에 접속하고 이용하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사업자들이 사업상 영업의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국외이전 시에는 좀 더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보니까, 국내외를 동등하게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이 건은 통지의 방법만...

○ 김재홍 부위원장

- 통지방법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그것과 관련해서 법 개정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정보통신망법 제63조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려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모든 경우에 동의를 받도록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모든 경우에 이용자의 동의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고 실제 현황도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법을 개정해서 이것이 9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에 제공, 처리위탁, 보관하려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처리위탁까지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로 해서 명확하게 하고, 다만,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고 이용자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제3항 각호의 사항 모두를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공개하거나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린 경우에는, 일정한 예외를 둔 것입니다. 그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위탁 보관에 따른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기본원칙은 여전히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지만 이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기본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서 그 계약의 이행으로 정보가 자동적으로 이전되거나 처리위탁되는 경우에는 그것을 나중에 알려 주는 것으로...

○ 김재홍 부위원장

- 통지만 하면 되게...

○ 최성준 위원장

- 예, 통지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하는 것으로 해서 현실과도 맞고 활용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을 규정했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예외조항에 관한 것이네요.

○ 최성준 위원장

- 예,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개정내용 두 번째 내용과 세 번째 내용,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통지방법, 이 두 가지 관련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인력 문제가 늘 있긴 하지만 이것이 9월 23일 시행되는 것이 지 않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 **이기주 상임위원**

- 제도가 계속 바뀌면 이것이 빨리 시장에 안착 내지는 정착되도록 해야 하는데, 제도 시행 이후에 몇 년 지난 후 어디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되면 그 때 가서 점검하는 것보다는..., IT 기업들의 현실적인 여건도 감안하고, 특히 통지방법을 구체화하여 사전동의 절차를 생략해 줌으로써, 국민들의 개인정보보호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든 것이 지 않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연말쯤 여기에 해당되는 기업들에 대해 꼭 점검 개념보다는 현장에 나가서 이 새로운 제도대로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에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별도로 보관하는 것은 이미 제도가 시행되어 왔다가 이제는 이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도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인데 이용자 통지방법은 한 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방송통신위원회 각 부서가 다양하고 복잡한 업무들을 취급하느라고 바쁘겠지만, 특히 이용자정책국 중에 개인정보보호윤리과의 최근 업무가 여러 분야에서 많이 증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증원이 즉시 이루어지지 못해서 대단히 미안하긴 하지만, 하여간 이 개인정보, 위치정보에 관한 부분들은 조금이라도 소홀히 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큰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써서 철저하게 업무를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다른 의견 더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 8. 기 타

### ○ 최성준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그러면 다음 회의는 7월 8일 금요일 9시 30분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9. 폐 회

### ○ 최성준 위원장

- 이상으로 2016년 제37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12분 폐회】